

전주지방법원 2018. 1. 24 선고 2017가단2188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

피 고 1.a

2.b

3.c

4.d

5.e

6.f

변론종결 무변론

판결선고 2018.1.24.

주 문

1.g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, 중 피고 a는 3/13 의 나머지 피고들은 각 2/13 의 각 지분에 한하여
이 법원 부안등기소 1994.10.24. 접수 제177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
이행하라.

2.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이해하기로 한다)

이 유

2.청구의 표시: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' 각 기재와 같다.

2.적용법조: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.

판 사 정 ○ ○ 부동산의 표시

전북 부안군 h 답 1,392㎡ 중 g의 지분 398/1,392 끝.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의 관계

(1) 소외 G 은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1993.09.17.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.

(2) 채권의 양수양도 순차 및 양도일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가.

양도순차	법 인 명	채권 양도일
1	주식회사 전북은행	최초채권발생회사
2	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	2003.3.28.
3	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	2010.11.01.

*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3.04.01.자, 와이티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습니다.

2. 양수금 채권의 발생

가. 소외 G 은 2017.09.08. 현재 아래 금원을 변제해야 합니다.

대출번호	대출원금	연체이자	대입전이자	법비용	합 계 금
I	4,931,291	13,694,803	7,130,924		25,757,018
총 계	4,931,291	13,694,803	7,130,924		25,757,018

나. 양수금 등 청구 소송

원고는 소외 G 에 대하여 2008.06.10. 선고,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862585 양수금 청구 사건을 통하여 소외 피고 G 은 금16,957,772원 그 중 금4,931,291원에 2008.04.18.부터 완제일까지 연19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

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득하였으며, 2008.09.09. 확정 되었으므로,

원고는 소외 G 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.

3.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

가. 소외 G 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

소외 G 은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4.10.24.집수 제17721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5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.

나.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

위 근저당권은 1994.10.22.에 설정된 것이므로 2017년09월 현재 피고 J 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.

따라서 피고 동우통상 주식회사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4. 결 론

따라서 원고는 소외 G 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J 에 대하여 시효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변경된 청구원인

[변경된 청구원인 3.4항]

3.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

가. 소외 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
 소외 은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4.10.24.접수 제17721호 근저당
 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50,000,000원
 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.

나.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

위 근저당권은 1994.10.22.에 설정된 것이므로 2017년09월 현재 소외 은
 사망함으로써 그 처 및 자녀들인 (별지
 기재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었습니다.)
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
 으므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.
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
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4. 결 론

따라서 원고는 소외 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위지와 같이
 피고 에 대하여 시효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
 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별 지
(상속지분표)왕) 1995.12.28. 사망

성 명	상속지분경지분	비 교
	(13분의3)	처
	(13분의2)	자
	(13분의2)	자
	(13분의2)	자
	(13분의2)	자
	(13분의2)	자

